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

#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9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30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지정축제의 평가·선정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목적규정 및 정의규정의 어색한 표현 등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
- 충청북도 지정축제 지정 신청, 선정·평가 및 지원에 관한 조문과 서식 정비(안 제4조 및 별지 서식)
-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 심의·의결의 객관적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신설(안 제7조)

## 5. 검토의견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지정축제(이하 ‘지정축제’라 함)의 평가 및 선정 업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이 충청북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밝힘.
- 안 제2조 내용 중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다수의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으로 변경하였는바, 지역축제 발전과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 조례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지역축제 참여의 주체로 지역축제의 주 참여자인 지역주민에 외부 관광객을 추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에서 및 안 제5조에서 축제평가단과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가 각각 지정축제의 평가와 선정 및 지원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축제평가단’ 내용을 삭제하고,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가 지역축제의 평가·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일원화하였음. 이를 통해 관련 위원회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정축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에서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위원으로 기존 충청북도의회의원, 문화예술단체 대표 외에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지역축제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였음. 관련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인사를 위원을 위촉하고, 지역축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에서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해당 위원회는 지역축제 중 충청북도가 지원할 수 있는 도 지정축제를 선정하는 위원회로서 위원 구성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부재하였음. 이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해당 위원회 운영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됨.
  
- 그밖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변경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한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